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신설〉

■ 한기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21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 방산원가 업무 수행절차 및 방산원가 구성체계	8
----------------------------------	---

I.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한기호의원 등 10인
- 2) 발의연월일 : 2026. 2. 12.
- 3) 회 부 일 : 2026. 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원가를 방산업체·일반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하 “업체”라 한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체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가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출입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필수적임에도, 현행법상 방위사업청장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조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 원가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세금계산서, 수출입 거래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58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u> <u>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1.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 「방위사업법」 제58조¹⁾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방산업체등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9조²⁾에서는 부당이득금의 환수 절차와 가산금 산정 기준³⁾을 정하고 있음[별표1].

- 1) 「방위사업법」 제58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9조(부당이득금등의 환수)①방위사업청장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이하 “부당이득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등의 금액, 납부기한 및 이의신청방법·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당이득금등을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법 제58조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별표 1과 같다.
- 3) [가산금 기본금액 산정]

부당이득금 규모 및 비율	기본금액
• 5억원 이상 이거나 20% 이상	부당이득금의 2배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이거나 10% 이상 20% 미만	부당이득금의 1.5배
• 1억원 미만 이거나 10% 미만	부당이득금의 1배

[가산금 가중/감경 기준]

가산금 가중		가산금 감경	
• 하도급자와 공모한 경우	50% 가중	• 적발 전 자진신고	50% 감경
• 최근 5년 이내 반복 적발 횟수		• 적발 후 다른 부정행위 자진신고	30% 감경
- 3회 이상	50% 가중		
- 2회	30% 가중		
• 공모한 경우와 반복 적발 횟수 모두 해당 시 가중비율 합산			

- 한편, 방위산업은 수요·공급 쌍방독점 및 실발생비용 보상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원가를 부풀리는 등 부정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상존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한정된 인력, 조사권 부재 등으로 인해 업체 내부의 광범위한 자료를 검토하여 원가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업체 내부고발, 외부의 감사·수사 등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은 원가부정행위의 사실관계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환수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출입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필수적임.

현행법상 방위사업청장이 국세청장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등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부당이득금 등의 규모를 산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산업체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은닉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와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할 수 밖에 없어 정확한 부당이득금 산정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실정임.⁴⁾

4) 사례: A사의 1차 하도급 업체인 B사가 2차 하도급 업체에 납품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대금을

[부당이득금 산정업무 현황(방위사업청, 2020 ~ 2025)]

연 도	관련 사업	대상 업체	산정 사유	부당이득금 산정 자료	산정 결과
2025	청상어 유도탄 등	(주)○○○ ○	협력업체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	법원판결문 분석	부당이득금(5.17억원) 가산금(7.26억원)
2024	K9A1 자주포 성능 개량 외주정비 등	○○○○ (주)	단순 계산착오	오류 수정	부당이득금(3.84억원)
2023	기만체계용탄	○○○○ (주)	단순 계산착오	업체 자진 신고에 대한 오류 수정	부당이득금(0.32억원)
2022	K 계열 장갑차 외 주정비 등 16건	(주)○○○ ○	단순 계산착오	업체 자진 신고에 따른 오류 수정	부당이득금(4.61억원)
2022	신공부품 구매계약	○○○○ (주)	수정계약시 최저 견적자료 누락	오류 수정	부당이득금(1.76억원)
2021	FA-50 후속양산 등	(주)○○○등 6개업체	단순 계산착오	업체 자진 신고에 따른 오류 수정	부당이득금(0.68억원)
2021	군용 표준차량 등	(주)○○	단순 계산착오	오류 수정	부당이득금(0.68억원)
2020	FA-50 항공기 양산 사업	○○○○ (주)	허위 원가자료 제출	법원 판결문 분석	부당이득금(21.34억 원) 가산금(21.34억원)
2020	대포병탐지레이다 발전기	(주)○○○ ○	협력업체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	법원 판결문 분석	부당이득금(0.27억원) 가산금(0.27억원)
2020	K계열 전차부품 (필터)	○○○○	허위 원가자료 제출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결과 분석	부당이득금(0.96억원) 가산금(0.96억원)

*자료: 방위사업청

둘러받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됨('18.12월).

검찰 수사 및 기소, 대법원 확정판결('25.5월)후 방위사업청에서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산정을 위해 계약업체인 A사를 통하여 원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업체의 자료 미보유 사유로 자료 확보가 제한되어 법원 판결문을 분석하여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산정함.

□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환수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관세청장·국세청장)에게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 원가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과 법률유보원칙을 고려하여 요청 사유를 ‘방사업체등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객관적인 원가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 ‘외국산 조달물자의 구매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관세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요청할 수 있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이 있음.

[개정안과 유사한 자료제공요청 근거 법률]

법률명	주요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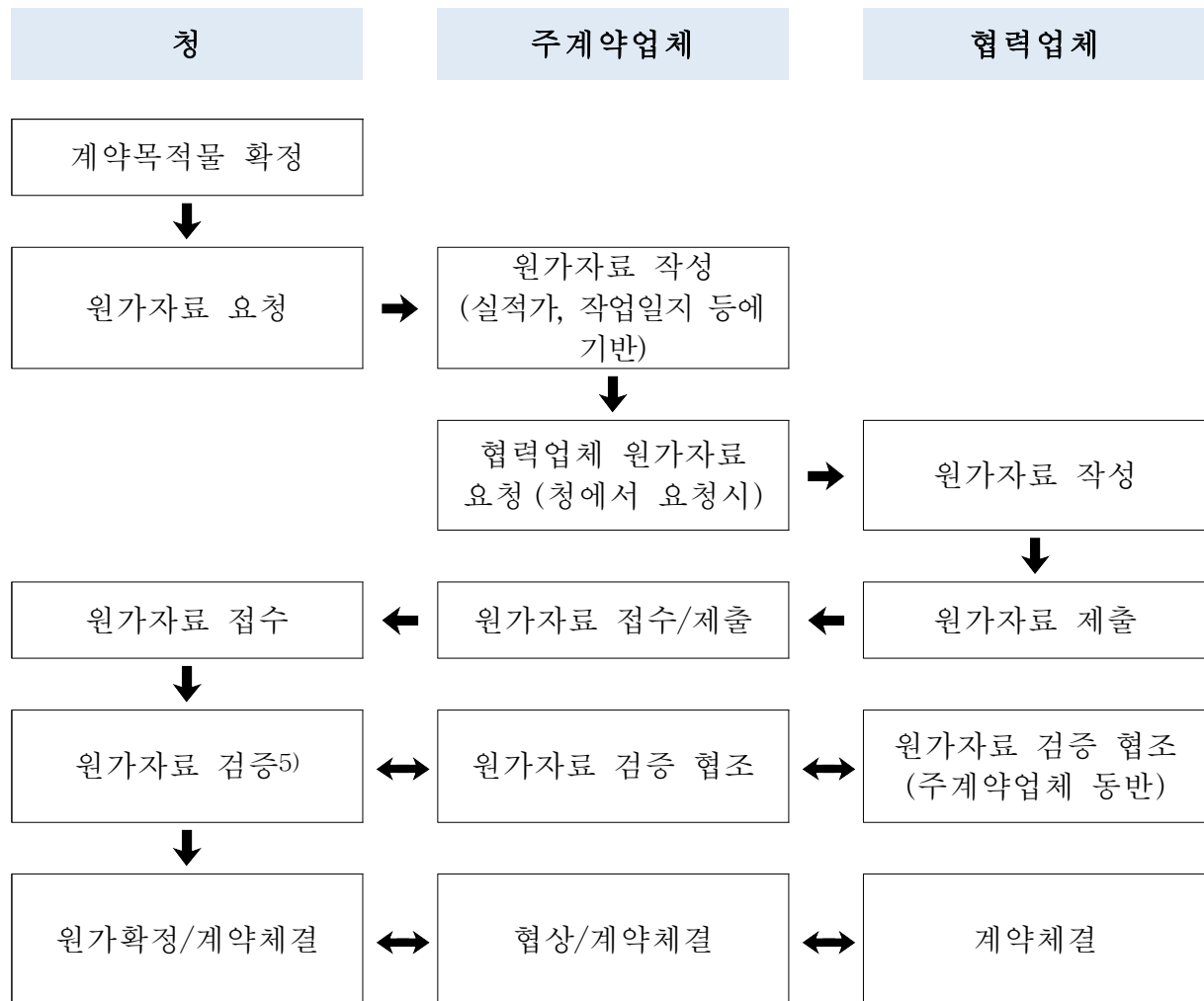
법률명	주요내용
법률」	따라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조달사업 중 외국산 조달물자의 구매사업과 비축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물품 등의 통관 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 2. 제1항제2호·제4호의 경우에는 조달기업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이용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
「관세법」	제37조의3(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조정 및 관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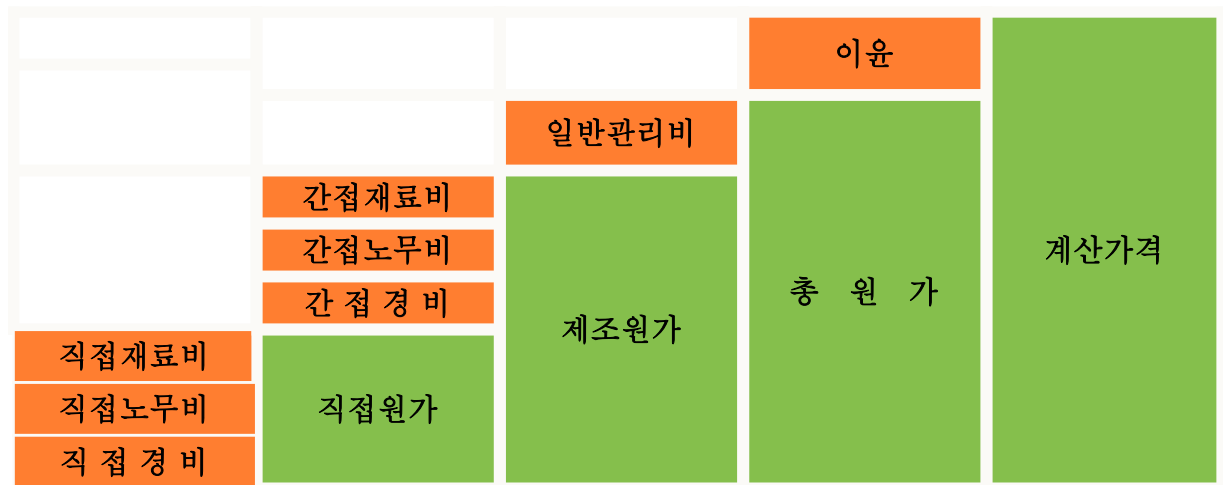
※ 참고자료: 방산원가 업무 수행절차 및 방산원가 구성체계

가 방산원가업무 수행절차



5) 원가자료 검증: 증빙자료 존재여부, 증빙자료의 단가 확인, 비원가 항목 여부 등 검토

나. 방산원가 구성체계



○ 방산원가 특성

- 계약업체의 실제 발생 노무비 단가를 기준으로 노무비 계산
- 계약의 위험도, 업체의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이윤 반영
- 방산물자 생산을 위해 투자된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 보상

○ 방산원가 이윤

- 기본보상액 : 방산경영안정보상액, 위험보상액, 투하자본보상액
- 노력보상액 : 수출확대보상액, 연구개발보상액, 중소기업육성보상액,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

*자료: 방위사업청